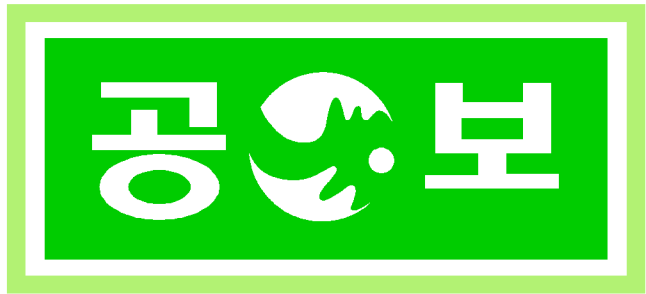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관 의 장



제 1035 호 2016. 11. 3. (목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82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6-187호[도로명주소 고시] 3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1059호[강동화암주상절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(안) 행정예고] 5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☎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
----------------	---

회 람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 - 182호

하천 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11월 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

동천
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울산제일일보(주) 임채일
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남구 둔절로 87 중앙빌딩 5층

3. 점용 목적 및 개요

제7회 태화강 환경보전 역사발 견기대회 행사장 설치
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치 : 명촌동 794-10번지 외 8필지

나. 면적 : 일시 4,242㎡
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

일시 : 2016. 11. 4. ~ 2016. 11. 5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6-187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11월 3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수동3길 9-1(호계동) 외 7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시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6. 11. 3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읍면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후수사구 198-4L	울산광역시 북구 수동로길 9-1(7세대)	2016-11-03	수동마을명칭을 사용하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	2013-12-30	
2	울산광역시 북구 장안동 1282-6	울산광역시 북구 장안로 3(장안동)	2016-11-03	법정동 명칭을 사용하지 도로명을 부여하였다	2013-12-30	
3	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동 1456-6	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25(화동동)	2016-11-03	화동은 화동의 옛 시명이며 신제가 겹침이므로 진 곳에 차근한 내용으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10-04-27	
4	울산광역시 북구 진동명준지구 368-2-1L	울산광역시 북구 고천로 202(진장동)	2016-11-03	고천 비상권의 공을 가리기 위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3-03-22	
5	울산광역시 북구 무릉동 348의 2필지(351-4, 351-5)	울산광역시 북구 달곡로길 52-6(무릉동)	2016-11-03	예전 시명인 달곡 공장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6	울산광역시 북구 장안동 1013-8	울산광역시 북구 등산로길 100-17(장안동)	2016-11-03	동내 마을 공장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7	울산광역시 북구 장안동 845-3외 1필지(845-2)	울산광역시 북구 장부길 56(장안동)	2016-11-03	장안동 지역의 장부들이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8	울산광역시 북구 구룡동 202-5	울산광역시 북구 민지2길 12-3(구룡동)	2016-11-03	기존 자연마을인 판지마을에 정착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- 1059호

강동화암주상절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(안) 행정예고

『문화재보호법』 제13조 및 『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』 제4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시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여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허용기준의 변경 고시 전에 그 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.

2016년 11월 2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대상구역 :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500미터 이내지역
(단 도시지역 중 주거·상업·공업 지역은 200미터 이내지역)

종별	지정번호	문화재명	위 치
기념물	제42호	강동 화암 주상절리	울산 북구 산하동 952-1 일원

2. 목 적 : 문화재보호법령 개정(2010. 2. 4.)으로 인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기준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)을 정하여 고시토록 명시화함에 따라, 마련하여 고시한 시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주변의 여건 등 변화에 따라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(안)을 수립 해당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함으로써,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시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코자 함.

3. 공고기간 : 2016. 11. 2. ~ 11. 22. (21일간)

4. 공고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<http://www.bukgu.ulsan.kr>),
북구청 문화체육과(관계도서 비치 및 공람)

5. 의견제출 및 접수

- 본 허용기준 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공고기간 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체육과(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문화체육과 문화남당)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문화체육과(☎052-241-733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조정(안)은 최종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,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1. 의견서 서식

2. 강동 화암 주상절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(안) 도면 : 별첨

[붙임 1]

- 강동화암주상절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
허용기준 조정(안)에 대한 -

의견제출서
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
	주소	(전화번호)

검 토 의 견 (의견제출 내용)

○ 의 견 :

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
허용기준 조정(안)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16년 월 일

제출자

(서명 또는 인)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

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주변 원상변경허용기준

울산광역시

-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울주군북면 개미초(중) 수화지 돌산 문화시절구 유적(면적 65㎡) 일
- 문화재 권 보호구역
- 문화재권장구역
- 원상변경허용기준
- 원상변경허용기준
- 원상변경허용기준

단, 보.

1. 1차역

2. 2차역

4. 4차역

비고: 본 기준은 2016년 11월 3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이며, 이후 변경되는 기준은 별도 고시한다.

1. 1차역: 1차역은 문화재권장구역에서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한다. 2차역: 2차역은 문화재권장구역에서 200m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한다. 4차역: 4차역은 문화재권장구역에서 400m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한다.

2. 2차역: 2차역은 문화재권장구역에서 200m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한다. 4차역: 4차역은 문화재권장구역에서 400m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한다.

4. 4차역: 4차역은 문화재권장구역에서 400m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한다.



